

<별지>

왜 나쁜 충남학생인권조례를 폐지해야 하는가?

한마디로, 학생의 권리만 있고 의무는 없는 아주 나쁜 비교육적인 조례이므로 폐지해야 마땅하다.

1. 학교와 학생의 본질과 사명은 ‘학업에 대한 권리’이다. 그런데, 조례내용에 없다. 한마디로, **교육을 외면하는 조례**로 결국, 부모와 학생들을 피해자로 만들게 된다.

2. 조례가 규정하고 있는 **학생의 권리**라는 것들이 **비교육적인 것**들이다.

- 제6조(신체의 자유)는 교사의 심부름을 ‘신체의 자유 박탈’로 가르치는데, 이런 논리가 가정에 적용되면 부모의 심부름도 ‘신체의 자유 박탈’로 생각하고 대들지 않겠는가?

- 제7조(양심과 종교의 자유)는 이단을 이단과 사이비라고 경계하는 것을 ‘종교 차별’이라고 금지하며, 부모의 신앙 교육을 ‘종교 강요 인권 침해’라며 부모를 고발하는 사례가 서울에서 발생하고 있다. 학교 규칙을 잘 지키겠다는 약속이나 반성문을 ‘양심의 자유 침해’라며 금지하는 비교육적 조례이다.

- 제11조(정보접근권)은 학생의 휴대전화 소지를 금지해서는 안된다고 한다. 핸드폰 소지로 무슨교육이 되겠는가?

- 제15조(차별받지 않을 권리)는 ‘**성적지향(동성애), 성별정체성(성전환), 종교(이슬람, 이단), 등을 권리화** 한다. ‘인종/민족/국가’등은 이슬람이나 중국의 문화를 학교에 강제하는 교육과 할랄 급식 등이 이뤄지는 근거가 될 수 있다. **임신 출산도 권리로 보장**되어 있다.

- 제16조(성인지 교육의 실시 등)은 왜곡된 남녀관을 가르쳐 남녀 갈등을 조장하고, 남녀가 화합하게 살도록 한 **창조 섭리에 반하는 교육**을 실시한다. ‘성인지 교육’은 양성평등기본법에 공무원 대상 교육인데, 왜 성평등(젠더)교육을 학생들에게 교육하며 페미니스트 돈벌이에 학생들 교육비를 지출하려 하는가? 또, 성관계 경험이 있는 학생에 대한 지도를 ‘편견’이라 규정하여 올바른 지도를 하는 교사들이 되려 학생권리침해라며 징계당할 수 있다.

- 제34조(학생인권센터)는 위와 같이 **비교육적인 행태를 금지하는 교사들을 고발하여**

징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, 교사들이 올바른 훈육을 포기하고, 학생들을 방치하는 행태가 이미 제정된 교육청들에서 나타나고 있는 현상으로 결국 학생과 부모가 피해자가 될 수밖에 없다.

3. 비교육적 활동에 중점을 두고 있는 조례이다.

- 제8조(표현과 집회의 자유) 항목은 정치권이 학생들을 집회에 데려다 쓰기 위한 근거를 제시하고 있는데, 이것은 2008년 광우병 시위때 학생들의 집회 참여를 학생인권이라 국가인권위원회가 주장한 데서 알 수 있다. **홍위병의 우려가 있다.**

- 제9조(개성을 실현할 권리)는 학교에서 학생들에 대한 복장 지도를 제대로 하지 못하게 하는 근거로 이용되고 있다. 서구에서도 학생복장 규제 다 한다.

- 제18조(학생 등의 의견제출권)~제22조(학교운영위원회에 참석할 권리)는 초중등교육법 제31조의 학교운영위원회의 권한을 침해하는 소지가 있고, **초중고생이 학업 외의 학교 운영에 집중하게 하는 것으로** 미국에서 가장 진보적이라는 뉴욕시의 학생 권리 목록에도 없는 것이다.

4. 헌법과 교육관련 법률은 교육은 '전문성과 자주성이 보장되어야 한다'고 규정하고 있으며, 학부모의 의견을 존중해야 한다고 되어 있음에도, 교원 자격증도 없는 **교육에 전문성이 없는 도의원들이 비교육적이며, 반헌법적인 조례를 만들어 다음 세대의 성장 잠재력을 개발하지 못하게 하고, 부모와 교사에게 순종적이지 못하게 만드는 행태는 부모로서, 신앙인으로서 용납할 수 없다.**

헌법과 법률의 정신을 위반하여 교육의 비전문가들인 도의원들이 자신들의 정치적 목적으로 학생들을 개조하려고 만든 나쁜 충남학생인권조례안을 폐지하라!!

“담배 . 술 . 음란물 등 지도가 곤란하고, 동성섹스 . 임신 . 출산을 조장하고, 교사 . 부모 고발을 조장하며, 교실산만 . 학력저하를 조장하는 비교육적인 나쁜 충남학생인권조례를 폐지하라!!”